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4-20호
2024. 4. 12.(금)

차 례

고 시(2)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고시 제2024-43호) 1
-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공사완료) 고시(고시 제2024-44호) 2

공 고(7)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24-416호) 6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418호) 7
- 공인 등록·폐기 공고(공고 제2024-419호) 8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426호) 9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430호) 12
-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공고 제2024-432호) 16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변경) 공고(공고 제2024-437호) 18

행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공고 제2024-423호) 19

공 램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43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대화동 275-43	대화로 234번길 5-10	건물신축	대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40m 지점에서오른쪽으로 분기 되는도로	2024. 4. 12.
신탄진동 100-6	대청로 45	건물신축	대청매의 명칭을 반영	2024. 4. 12.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042-608-5304)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공사완료)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번지 일원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하고,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시행구역의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번지 일원
4. 시행구역의 명칭: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5. 사업시행자 성명: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11, 3층(신대동))
6. 준공인가내역
 - 가. 정비구역 현황

정비사업구역	공동주택	도로	공원	비고
44,150.8㎡	38,581.2㎡	3,737.0㎡	1,832.6㎡	

나. 공동주택

용도	세대수	층수	동수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비고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910세대	지하3층/지상29층	8개동 (부대복리시설 포함)	6,011.9㎡ (15.79%)	128,155.9㎡ (234.7%)	

○ 공동주택 세부현황

NO	구분	현황	비고
1	대지면적	38,081.2㎡	공동주택 및 근생 유치원
		500.0㎡	
2	건축면적	6,011.9㎡	
3	연 면 적	128,155.9㎡	
4	용적률산정 연면적	89,375.2㎡	
5	건 폐 율	15.79%	
6	용 적 률	234.70%	
7	지하연면적	38,780.67㎡	
8	지상연면적	89,375.22㎡	
9	조정면적	12,520.46㎡	
10	구 모	지하3층/지상29층 공동주택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11	동수	주건축물	8 (근린생활시설 1개동 포함)
		부속건축물	
12	주차대수	지상	130대
		지하	1,038대
		계	1,168대
13	세대수	910세대	
14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15	세대형별	63A	175세대
		63B	104세대
		75A	148세대
		75B	112세대
		75C	25세대
		84A	169세대
		84B	156세대
		84C	21세대
	합계	910세대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등급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구 모 번호	폭원 (m)								
대로	1	2	35~42 (3)	주 간선	16,015 (70)	대로 1-1 (신흥동11-5)	북측 지구계 (신발진116-3)	일 반 도로	대전고시 제7-60호 (1965.10.13)	
소로	1	와동2	10 (1~2)	국 지 도로	840 (260)	대로 1-2 (와동 383-13)	중로 3-167 (와동 산39-1)	일 반 도로	대덕구고시 제97-27호 (1977.2.26)	
소로	2	와동1	8	국지 도로	448	중로 3-167 (와동 346-1)	중로 1-296 (와동 48-4)	일 반 도로	대덕구고시 제97-27호 (1977.2.26)	정비구역외 연결구간
중로	1	296	20 (12)	집 산 도로	98 (98)	대로 1-2 (와동 39-13)	중로 3-279 (와동 48-4)	일 반 도로	대고 제2015-53호 (2015.4.3)	
중로	3	279	12~15 (4~15)	국 지 도로	251 (251)	중로 1-296 (와동 48-4)	소로 1-와동2 (와동 12-2)	일 반 도로	대고 제2015-53호 (2015.4.3)	
소로	3	와동2	6	국 지 도로	1,216	소로 1-와동2 (와동 33-7)	중로 3-168 (와동 64-14)	일 반 도로	대덕구고시 제2011-76호 (2011.11.4)	정비구역외 연결구간

※ ()는 정비구역내 사항임

※ 정비사업시행자는 구역의 연결구간(소로2-와동1, 소로3-와동2 노선)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에 따라 시행완료하고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여야 함

라.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명칭	세분류			
-	소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	1,832.6	대고 제2015-53호 (2015.4.3.) 최초결정

7. 준공인가일: 2024년 4월 9일

8. 아래 각 호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검사,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주택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나.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준공검사

라. 「도로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의 준공검사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416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34-3 외 2필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상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3. 공고기간: 2024. 4. 12. ~ 2024. 4. 27.(15일간)
4. 공고대상

소재지	지적 (㎡)	편입 면적 (㎡)	지목	소 유 자		이 관 계 인 동의여부
				주 소	성 명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436-9 번지	711	23	답	주소생략	(주)북*****	동의
	계	23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대덕구청 건축과로 의견(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건축과 건축허가팀(☎042-608-51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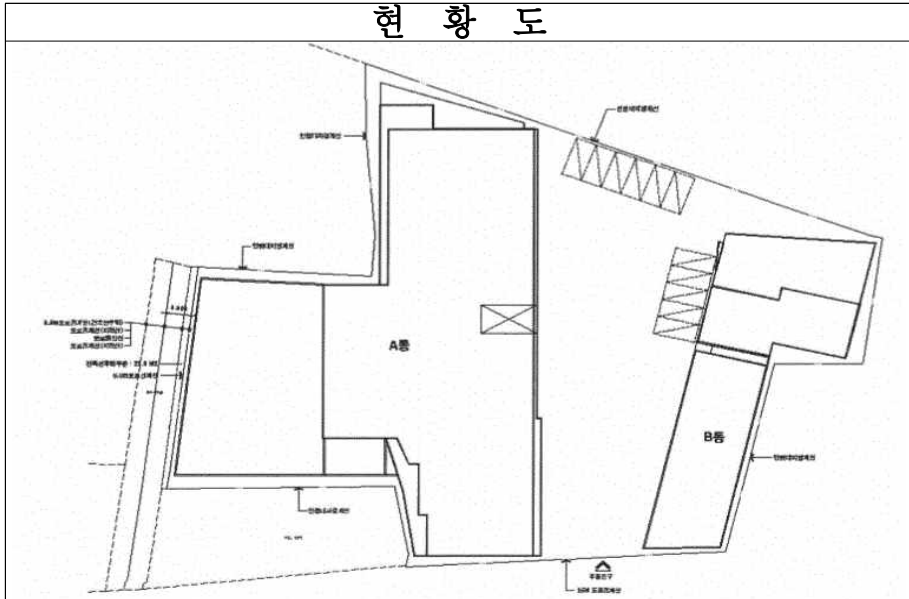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에 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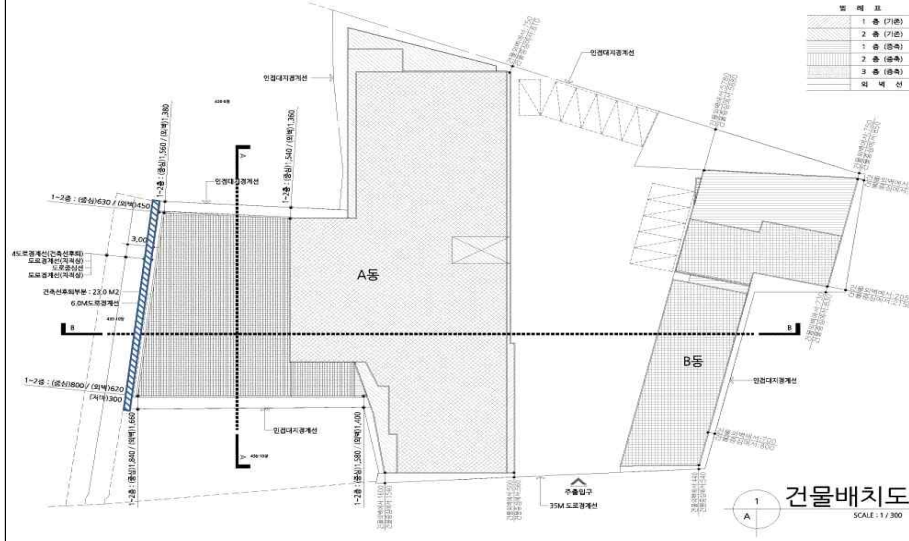
2024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4. 4. 12. ~ 2024. 4. 26. (15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 나. 대상업소: 대덕구 동삼길 89, 1층 (대화동) / 진용식품 (이○회)
 -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누렁지마을 (사업자등록 폐업일 2020. 5. 15.)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26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식품유통팀 ☎(042)608-6964. 끝.



축 척 < 입 의 >
도로지정 위치 및 면적산출표



축 척 < 입 의 >

끝.

공인 등록·폐기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인 등록·폐기일자: 2024. 4. 12.(금)
2. 공인 등록·폐기내역: 4개(등록 2개 / 폐기 2개)

연번	구분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변경일자	사유
1	공인 등록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인 석봉동민원용 (인증기용)	훈민정음체 / 3.0cm 정방형		2024.4.12.	내구연한 만료로 인한 인증기 교체
2	공인 등록	석봉동장인 (인증기용)	훈민정음체 / 2.1cm 정방형		2024.4.12.	내구연한 만료로 인한 인증기 교체
3	공인 폐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인 석봉동민원용 (인증기용)	훈민정음체 / 3.0cm 정방형		2024.4.12.	내구연한 만료로 인한 인증기 교체
4	공인 폐기	석봉동장인 (인증기용)	훈민정음체 / 2.1cm 정방형		2024.4.12.	내구연한 만료로 인한 인증기 교체

끝.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환부불능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16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4. 4. 12. ~ 4. 30. (18일간)
4. 공고대상: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4. 4. 30.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

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

[별첨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김*호	48다37**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 (신림동)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환부불능
구*미	61보88**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 178, ***동 ****호(법동, 보람아파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환부불능
오*영	02더1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동 ****호 (석봉동, 금강역슬루타워)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9항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100,000	환부불능
박*순	18보37**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계곡로***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환부불능
황*복	81무28**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4길 104, ***호(감삼동)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환부불능
이*호	171루35**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북로 46, ***동 ***호(법동, e편한세상)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환부불능
주식회사 시그***	66도0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3길 55, ***호(합정동)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환부불능
김*조	333머96**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114번길 47, ***동 ****호 (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환부불능
정유미	20조7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55, ***동 ****호 (석봉동, 금강역슬루타워)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9항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100,000	환부불능

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4. 4. 12. ~ 4. 30. (18일간)
4. 공고대상: 불입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4. 4. 30.(화)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자원순환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라.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

[별첨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명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췁올리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중앙길 30-**	담배꽁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김*자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별로 267-***	담배꽁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PHAM MINH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로68번길 15, ***호(공동)	담배꽁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최*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동로18번길 30, ***동 ***호(비래동, 미래아파트)	담배꽁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장*형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전동로 678-*(삼성동)	담배꽁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양*승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1674번길 14, *동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200,000	폐문부재

[별첨2]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명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김*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45, ***동 ***호	담배꽁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끝.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번지 일원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와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가 의제처리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공원)
2. 사업의 명칭: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번지 일원
4. 사업시행자의 성명: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11, 3층(신대동))

5. 사업의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등급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류별	번호	폭원 (m)							
대로	1	2	35~42 (3)	주 간선	70	대로 1-1 (신흥동11-5)	북측 지구계 (신탄진116-3)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7-60호 (1965.10.13)	
소로	1	와동2	10 (1~2)	국지도로	260	대로 1-2 (와동 383-13)	중로 3-167 (와동 산39-1)	일반도로	대덕구고시 제 97-27호 (1977.2.26)	
중로	1	296	20 (12)	집산도로	98	대로 1-2 (와동 39-13)	중로 3-279 (와동 48-4)	일반도로	대고 제2015-53호 (2015.4.3)	
중로	3	279	12~15 (4~15)	국지도로	251	중로 1-296 (와동 48-4)	소로 1-와동2 (와동 12-2)	일반도로	대고 제2015-53호 (2015.4.3)	

나.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비고
명칭	세분류			
-	소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	1,832.6	대고 제2015-53호 (2015.4.3.) 최초 결정

6. 사업시행기간: 2019년 2월 ~ 2024년 12월 (72개월)
7. 관계도서: 게재생략 끝.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변경)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324-9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기존	상서동	2㎡	2m	오봉용	소유자
	변경	324-9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26-6(비래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행정예고 할 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 행정예고 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26-6(비래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노상주차장 1면 폐지(사유 :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항에 근거한 주·정차금지 구역에 해당) 추진에 대하여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예고대상

위 치	폐지면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26-6(비래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1

4.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6항

- 행정예고(공고)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https://www.daedeok.go.kr>)

-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 4. 12.(금) ~ 2024. 5. 2.(목) (21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교통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20)

※ 토·일·공휴일은 대덕구 당직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메일

(FAX: 042-608-3845, 메일: vlfwpdi@korea.kr)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붙임 참조)

마. 제출기일: 2024. 4. 12.(금) ~ 2024. 5. 2.(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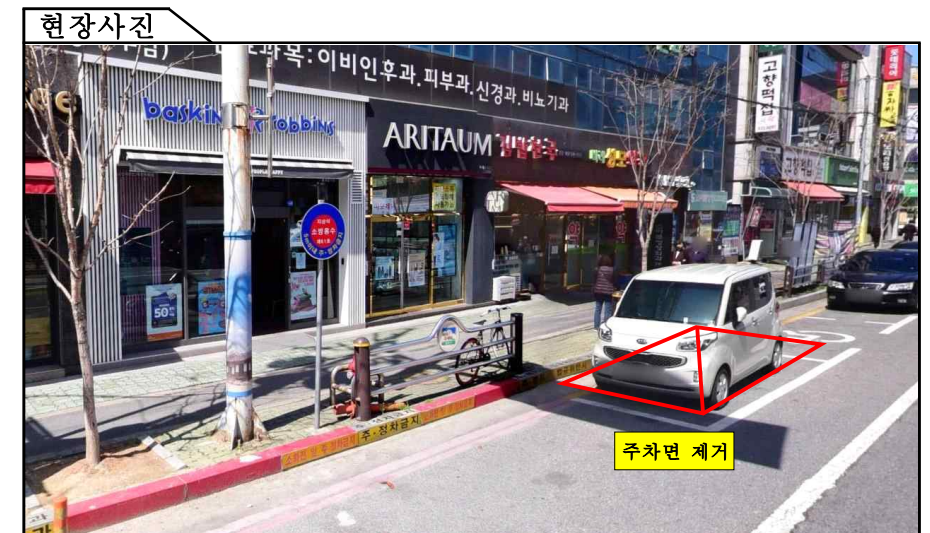
바.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주차시설팀(042-608-529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의견제출서 서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끝.